

대구지방법원 2021. 3. 11 선고 2020가단126153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

담당변호사 이재동

피고B

변론 종결2021. 2. 18.

판결 선고2021. 3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11. 14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변지영

별지